

수원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나932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나932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6 선고 2021가소121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2. 7. 12.

판결 선고 2022. 10. 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6. 선고 2021가소121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지상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급한 원고는 2016. 10. 1.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해 건축가설재 임대업체인 피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G의 신용을 염려한 피고는 하도급인인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0. 6.부터 2017. 9. 30.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현장명: 진천/E청사 신축현장

(충북 진천군 D)

원고, F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진천/E청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가설재임대료 중 미지급 임대료 73,953,135원에 대하여 원고와 G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5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1,953,135원을 감액한다. 단,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원고와 G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그 지급이 이루어지면 위 현장에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G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미수금	비고
원고	11,655,065	2017. 12. 1. 수금완료
F	45,886,670	
F 멸실금	16,411,400	
채권액(합계)	73,953,135	
감액	-21,953,135	
지급 예정 금액	52,000,000	

원고: 12월 2,000만 원, 2월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에 지급

(일부 F로 입금 시 원고 부담금액)

G: 12월 600만 원, 1월 600만 원을 각각 피고에 지급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채권 등 61,623,841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773호로 F의 군포시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8. 5. 11. F로부터 40,344,93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4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11,655,065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F은 2018. 5. 11. 피고에게 40,344,935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의할 시 F이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지급금액이라 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52,000,000원(=

11,655,065원 + 40,344,935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감액된 위 40,0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73,953,135원을 52,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원고가, 나머지 12,000,000원을 G가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할 시 위 미지급 임대료의 감액은 "원고, G가 피고에게 52,000,000원(원고 2017. 12. 20.,000,000원, 2018. 2. 20.,000,000원, G 2017. 12. 6.,000,000원, 2018. 2. 6.,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원고와 G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액(73,953,13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함이 그 문언상 명백한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도급인인 C 주식회사가 2017. 12. 1. 피고에게 11,655,065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고가 2017. 12. 및 2018. 2.에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위 대금 감액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12,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재광

판사이명선

판사이나경